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146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2. 7 선고 2021나800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8 선고 2020가단214632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명의변경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2. 중순경 체결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의 사업자명의변경 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69,369,0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그 배우자인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22415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3. 피고 C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003,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C는 2018. 11. 21.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8473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0. 개인회생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9. 10. 21. 피고 C가 제출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서울 서초구 D에서 E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편의점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47,240,979원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12. 10.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행위’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및 회생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 B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를 강제집행면탈죄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C는 이 법원 2019고약12647호로 약식기소되어 이 법원은 2019. 12. 30. 피고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는바, 위 사업자명의변경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변경 행위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추심을 방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잔여 채권액인 169,369,0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변경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행위로 인한 사업자명의변경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B은 2012. 10. 7.경 이 사건 편의점의 전 영업주인 H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상품대금 2,1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을 합한 5,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하였던 점, ② 피고 B은 2012. 2. 27.부터 2012. 3. 9.까지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위한 경영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가맹본부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경영자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4. 9.경부터 이 사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해왔던 점, ③ 피고 C는 당시 만 21세로서 이 사건 편의점을 인수할 자금도, 운영할 능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에 필요한 위와 같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는 점, ④ 위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편의상 사업자등록명의만 딸인 피고 C 명의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편의점 가맹계약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계약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C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가맹본부는 피고들에게 사업자명의 변경이 없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C 명의로는 더 이상 이 사건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변경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변경행위 전부터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피고 C가 아닌 피고 B이었고, 이 사건 편의점의 사업운영권 또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 B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변경 행위로 인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추심이 방해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의 사업자명의변경계약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